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047
----------	------

발의연월일 : 2017. 5. 26.

발의자 : 김성원 · 박인숙 · 함진규
김도읍 · 이은권 · 김정재
유의동 · 이우현 · 김학용
서청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인 30년까지 법정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는 원래 15년이던 것이 지난 2010년 개정을 통하여 그 2배인 30년까지 가중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흉악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가중일 뿐이었음. 그럼에도 행정 분야의 최저형 규정 조항들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 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법률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5년 이상의”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